

## 제 3 장 원산지 규정

### 제 3.1 조 원산지 상품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은 다음의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상품이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1) 제 3.2 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2) 제 3.3 조에 정의된 대로 그 상품이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경우, 또는
  - 3) 그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이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제 3.2 조 완전하게 획득

다음 상품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됨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광물과 그 밖의 무생물 천연자원
-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성 상품
- 다.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그 영역에서 전적으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라.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토, 내수, 그리고 영해의 외측 한계선 내에서 수행된 수렵, 뎃 사냥 또는 어로로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해 밖의 바다,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잡힌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 생물
- 사. 바호에 언급된 어류, 패류 또는 그 밖의 해양생물로부터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가공선박은 당사국에 등록, 등기 또는 등재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
- 아. 어류, 패류 및 그 밖의 해양생물을 제외하고,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에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채취되거나 추출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11 부에 따라 그 해저, 해상 또는 하층토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자.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획득되고, 비당사국 영역에서 가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으로부터 회수된 부분품. 다만, 그 중고품은 그러한 회수용으로만 적합해야 하며 이로부터 회수된 부분품은 좋은 성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공을 거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가호부터 카호까지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품만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히 생산된 상품

### 제 3.3 조 충분한 생산

1.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부속서 3-가의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이 전적으로 충족되고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

품으로 간주된다.

2. 부속서 3-가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 또는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그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과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제 3.4 조 가치 평가

1. 제 2 항과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서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치 평가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부속서 3-가에 명시된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2. 제 8701 호부터 제 8708 호까지의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 또는 그 상품의 순원가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3.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8701 호부터 제 8706 호까지의 상품에 대하여,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이다.

4. 제 2 항에 따라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의 생산자는

- 가. 그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 비용을 계산하여, 그러한 모든 상품의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

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한 후, 이렇게 도출된 그러한 상품들의 순원가를 그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 나. 그 생산자가 생산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총 비용을 계산하여, 그 상품에 그 총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한 후, 그 상품에 할당된 그 총 비용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또는,
- 다. 그 상품에 대하여 발생한 그 총 비용의 부분을 구성하는 각 비용을 합리적으로 할당하여, 이러한 비용들의 총 합이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또는 비허용 이자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5. 제 4 항에 따라 제 8701 호부터 제 8705 호까지의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범주 중 하나를 사용하여, 그 범주내의 모든 자동차를 기초로 또는 그 범주 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만을 기초로, 생산자의 회계연도에 걸쳐 평균을 낼 수 있다.

- 가.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등급의 자동차의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 나.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 다.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된 동일 모델 라인의 자동차
- 라. 당사국 영역의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등급의 자동차, 또는
-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한 그 밖의 모든 범주

6. 제 4 항에 따라 동일 공장에서 생산된 제 8706 호부터 제 8708 호까지의 상품의 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상, 생산자는

- 가. 다음에 걸쳐 평균을 낼 수 있다.

- 1) 그 상품이 판매되는 자동차 생산자의 회계연도
  - 2) 어느 분기 또는 월. 다만 그 상품은 그 계산의 기초를 이루는 분기 또는 월 동안 생산되었어야 한다. 또는
  - 3) 자동차 재료 생산자의 회계연도
- 나. 가호에 언급된 평균은 하나 이상의 자동차 생산자에게 판매되는 어떤 상품 또는 모든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 다. 가호 또는 나호의 평균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위하여 별도로 계산할 수 있다.

### 제 3.5 조 생산에 사용된 재료

1. 비원산지 재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 결과물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며, 그 상품이 이후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때, 그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2. 제 3.6 조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정의의 목적상 제 3.12 조 및 부속서 3-가에 규정된 비원산지 구성상품과 비원산지 포장재료 및 용기를 포함하며, 다음을 말한다.
  - 가. 당사국으로의 수입 당시 재료의 거래가격 또는 관세가격으로서, 필요한 경우 수입 장소로 재료를 운송하는 데 발생한 화물운송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치, 또는
  - 나. 국내 거래인 경우, 그 재료의 가치는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에 따라, 국제 거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며 상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3. “원산지 재료 가치”란 제 3.6 조 제 2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품이 생산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생산자가 소재한 당사국의 생산자에 의해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재료 가치를 말한다. 만약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가치가 없는 경우, “원산지 재료 가치”는 제 2 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가치가 될 것이다.

### 제 3.6 조 자가생산 재료

1.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목적으로, 상품의 생산자는 그 상품이 원산지 규정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안에 따라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어떠한 자가생산 재료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재료로 고려되도록 지정할 수 있다.

2. 자가생산 재료의 가치는 다음에 따른다.

가. 그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모든 상품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 또는

나. 그 자가생산 재료에 대하여 발생되어, 그 자가생산 재료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총 비용을 포함하는 모든 비용의 합

### 제 3.7 조 누적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상품의 생산은,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되는 그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선택에 따라,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 영역에서 수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는 제 3.3 조의 의미 내에서,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충분한 생산을 거치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상, 교차누적 또는 범자유무역협정 누적과 같은 다른 형태의 누적을 규정할 목적으로 이 조항을 검토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 제 3.8 조 최소허용수준

1. 이 장의 제 3.3 조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50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 변경을 거치지 않거나 그 밖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다만,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속서 3-가의 규정이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가치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계산에 포함된다. 그리고

나. 그 상품이 이 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다.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50 류부터 제 60 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원사가 부속서 3-가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원사의 총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3.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61 류부터 제 63 류까지의 상품은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상품의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특정 비원산지 원사가 부속서 3-가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그러한 모든 원사의 총 중량이 그 구성요소의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4. 부속서 3-가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한, 제 1 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 1 류부터 제 21 류까지 규정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 3.9 조 대체가능 재료 및 상품

1. 재료 또는 상품이 원산지 재료 또는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모든 대체가능 재료 또는 상품은 다음에 의하여 식별된다.

- 가. 각각의 대체가능 재료 또는 상품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 또는
- 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 인정되는 또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

2. 제 1 항에 따라 특정 재고관리기법이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재고관리기법을 선택한 인의 회계연도에 걸쳐 그러한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 제 3.10 조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통칙 3 에 따라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은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간주된다.

- 가.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하여, 상품의 모든 구성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또는
- 나.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이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구성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의 비원산지 포장재료와 용기를 포함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 3.11 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가 상품의 부분을 형성하는 그러한 상품과 함께 인도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그 상품이 원산지인 경우 원산지로 간주되며, 그러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다만,

- 가.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나. 그 부속품, 예비부품 또는 공구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 3.12 조**  
**소매용 포장재료 및 용기**

제 3.10 조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의 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 및 용기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3-가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요건을 거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3 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상품의 수송을 위한 포장에 사용된 포장재료, 용기, 팔레트, 또는 유사한 물품은 그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간접 재료**

상품의 원산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상품의 생산,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의 최종 구성물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그 상품의 생산과 연계된 설비와 건물의 유지 또는 설비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는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아니하다.

- 가. 에너지 및 연료
-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과 재료
-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과 그 밖의 재료
-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안전장비 및 안전 보급품
-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아니하나, 그 생산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 3.15 조**

## 영역 원칙

1. 제 3.1 조부터 제 3.20 조까지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입증되는 경우, 당사국으로부터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이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재반입되는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그리고
  - 나. 그 비당사국 내에 있는 동안이나 수출되는 동안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 제 3.16 조 통과 및 환적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 이유로 인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 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 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는 것

### 제 3.17 조 적용과 해석

이 장의 목적상,

- 가. 품목분류의 기초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다.
- 나. 제 3.3 조제 2 항을 적용하는 경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호 또는 소호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상품 및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해석의 통칙에 따라 호 또는 소호의 상품분류체계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다. 이 장에 따라 「관세평가협정」을 적용하는데 있어,

- 1) 「관세평가협정」의 원칙은 이 원칙이 국제 거래에 적용되는 것과 같이,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수정되어 국내 거래에 적용된다.
- 2)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장의 규정은 「관세평가협정」에 우선한다. 그리고
- 3)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 3.20 조의 정의는 「관세평가협정」의 정의에 우선한다.

### 제 3.18 조 협의 및 수정

1. 양 당사국은 이 장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적으로, 이 협정의 정신과 목적에 합치되게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제 4 장(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따라 이 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 생산공정 또는 그 밖의 사안에 있어서의 진전을 고려하여 이 장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국은 제 4.14 조(원산지 규정 및 관세 위원회)에 따른 검토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그 근거와 연구자료와 더불어 수정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 3.19 조 공동 지침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까지 이 장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공동 지침을 개발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 제 3.20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류란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분류된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특정 호 또는 소호에 따른 상품의 분류를 말한다.

관세 가격이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란 상업적 목적으로 호환 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란 수입, 경비, 비용, 자산 및 부채의 기록, 정보의 공개, 그리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에서 인정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세부 표준,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 적용을 위한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상품이란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당사국에 등재된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른 외국등록 나용선으로, 그 외국에의 등록이 용선 기간 동안 정지된 선박을 의미한다.

재료란 다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구성요소, 부품 또는 그 밖의 상품을 의미한다.

순원가란 총 비용에서 총 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판촉,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 및 포장 비용, 그리고 비허용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상품의 순원가란 제 3.4 조제 4 항에 규정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상품에 합리적으로 할당될 수 있는 순원가를 말한다.

비허용 이자비용이란 생산자에 의해 발생한 이자 비용으로서, 비슷한 만기가 적시된 적용 가능한 국채율 보다 700 베이스 포인트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각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원산지 상품 또는 원산지 재료란 각각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의 자격을 갖춘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그 밖의 비용이란 이자와 같이 생산자의 회계장부에 기록된 비용으로서 제품 비용이나 기간비용이 아닌 모든 비용이다.

기간비용이란 제품비용 이외의 것으로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와 같이 발생한 기간 중에 소요된 그러한 비용을 말한다.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종사하는 인을 말한다.

생산비용이란 상품의 생산에 연계된 그러한 비용을 말하며 재료 가격,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를 포함한다.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어로, 사육, 밭 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을 말한다.

합리적 할당이란 상황에 따른 적합한 방식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로열티란 기술지원 또는 유사한 합의에 따른 지불을 포함하여 저작권, 문학, 예술 또는 과학 작품, 특허, 상표, 디자인, 모델, 도면 또는 기밀 제조법 또는 공정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권리의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종류의 지불로서, 다음과 같은 특정서비스와 관련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유사한 합의에 따른 지불은 제외한다.

- 가. 장소를 불문한 직원교육, 그리고
- 나.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되는 경우, 엔지니어링, 공구 세공, 다이 세팅,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유사한 컴퓨터 서비스,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관측, 마케팅 및 판매 후 서비스 비용이란 다음에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 가. 판매 또는 마케팅 촉진, 미디어 홍보, 광고 또는 시장 조사, 선전 또는 시범용 재료, 전시, 판매 회의, 무역 전시 또는 박람회, 현수막, 마케팅 전시, 무료 견본, 판매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인쇄물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 인쇄물, 가격 목록, 서비스 매뉴얼 또는 판매 지원 정보), 로고 및 상표의 설립 또는 보호, 후원, 도매 또는 소매 재고 비용, 접대
- 나. 판매 또는 마케팅 장려금, 소비자, 소매판매자 또는 도매판매자 리베이트, 제품 장려금
- 다.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직원을 위한 보수 또는

봉급, 판매 수수료, 상여금, 수당(예: 의료, 보험 또는 연금), 여행 또는 생활경비, 회비 또는 전문적 수수료

- 라.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직원의 채용 또는 훈련, 또는 고객을 위한 종업원의 판매 후 훈련.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 마. 제조물 책임보험
- 바.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를 위한 사무용품.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 사. 전화, 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상품의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 아.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사무소 및 유통 센터의 임대료 또는 감가상각비
- 자. 손해보험료, 세금, 공공 요금 또는 판매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사무소 또는 유통센터의 수리 또는 유지비. 다만, 그러한 비용이 생산자의 재무제표 또는 비용계정에 판매 촉진, 마케팅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명목으로 별도로 적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 차. 보증수리를 위하여 생산자가 다른 인에게 한 지불

**자가생산 재료**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운송 및 포장비용**이란 운송을 위하여 상품을 포장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그 상품을 직접 선적지로부터 구매자에게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상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준비 및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세 규정**이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 호 또는 소호를 말한다.

**영해**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2 부에 따라 결정되는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경계까지의 바다 부분을 말한다.

총 비용이란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발생하는 제품비용, 기간비용과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총 비용은 생산자가 보유하거나 타인에게 배당금으로 지불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자가 벌어들인 이윤이나, 자산 취득세를 포함하여 그러한 이윤에 대하여 납부된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거래가격이란 상품의 생산자의 거래에 있어서, 그 상품 또는 재료에 대하여 실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으로서, 「관세평가협정」의 제 8 조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의 원칙에 따라 특히 수수료, 생산 지원, 로열티 또는 권리사용료와 같은 비용을 포함하도록 조정된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이란 이 정의의 목적상 제 3.10 조 및 부속서 3-가의 상품의 세트 또는 집합을 포함하며, 다음을 말한다.

가. 생산지에서 생산자에 의하여 판매되는 상품의 당시 거래가격, 또는

나. 그 상품의 관세가격

필요한 경우, 화물운송비 및 보험료와 같이 그 상품이 생산지를 떠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하도록 조정된 가격